
2025년 화성시 상수도시설물(배수지, 가압장) 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5. 01.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2025년 화성시 상수도시설물(배수지, 가압장) 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5년 화성시 상수도시설물(배수지, 가압장) 안전점검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1) 시설물명 : 화성시 관내 상수도시설물(배수지, 가압장)

2)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관내 일대

3) 구 분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37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19개소 + 정밀안전점검 18개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5) 용역금액 : 금541,194,000원(금오억사천일백일십구만사천원)

6) 시설물 점검항목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 상수도 시설물

구 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기본 시설물	◦ 취수시설(수원지포함)	○	○	기본과업
	◦ 취수장	○	○	
	◦ 관로시설 (취·도·송수관로 및 수로터널)	○	○	
	◦ 정수시설	○	○	
	◦ 가압장	○	○	
	◦ 배수지·조절지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추락방지시설	○	○	기본과업
	◦ 도로포장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 토목구조물과 건축물이 일체로 된 경우의 건축물은 기본 시설물에 포함된다.
- ※ 기본시설물에 포함되는 배수지는 송수관로 관말부에 위치한 배수지를 의미한다.
- ※ 선택과업은 별도 대가를 반영하여 실시

7) 대상시설물

번호	명 칭	종 별	상반기	하반기	비고
1	남양5배수지(5단계)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2	남양5배수지(기존)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3	남양5배수지(현대)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4	남양6배수지(기존)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5	남양6배수지(증설)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6	능3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7	능4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8	능5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9	능5배수지(증설)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10	동탄산척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11	동탄산척가압장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12	동탄산척송수관로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13	동탄석우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14	동탄신리배수지	1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15	마도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16	마도배수지(증설)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17	문호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18	배양배수지(구)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19	배양배수지(신)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20	봉담동화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21	봉담상리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22	서신광평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23	우정조암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24	장안사랑(신)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25	장안사랑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26	전곡장외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27	정남문학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28	정남문학배수지(증설)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29	정남산업단지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30	통합운영가압장	1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31	팔탄구장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32	향남도이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33	향남발안배수지(구)	2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34	향남발안배수지(신)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35	화리현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36	봉담상리2 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37	비봉증설배수지	2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4.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화성시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화성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 ③ 보안대책 및 각서
 - ④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 4)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화성시에 등록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매주 월요일 오전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공정 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화성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 전주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 제출
-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성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화성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화성시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7)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8)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화성시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 9)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성시와 협의하고 화성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1부씩 제출, 사
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 11)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화성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지원 요청시 화성시는 관
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과업수행자에게 장비를 지원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 15) 과업 수행방법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 통제요청서를 작성 화성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
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 ①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 ②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 ③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차점용, 우회도로 등)계획
 - ④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및개수와설치지점)
- 16)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 17)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
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

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각종 지침 및 제 기준 준수

본 과업수행은 아래 법령 및 지침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4)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5)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다. 보안사항

-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화성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모든 성과품은 화성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과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화성시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화성시가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 특별사항

가.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화성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1) 교통통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
- 2) 화성시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증가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 3) 기타 화성시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시

다. 과업 세부내용

- 1) 정기안전점검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 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제3종 시설물에 한해 실시)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 2) 정밀안전점검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6. 과업의 수행

- 1)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2)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하여야 한다.
- 3) 구조형식별 및 구조적으로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구조 부분별로 항목을 제시할 것.
-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하였을 시는 과업 중이라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인쇄 및 제출

가. 보고서 작성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1) 정기안전점검

구분		내용
1.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 (정기안전점검의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안전점검표
	다.시설물의 안전 등급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마.부록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2) 정밀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안전등급 지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와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시험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 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 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	-------	--

나.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라. 납품목록

- 1)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 3부
- 2) 사진첩 3부
- 3) 성과품 CD(설계도서 포함) 3set